

교육실습(학교현장실습 · 교육봉사활동) 면제 기준

[관련근거] 교육부고시 제2016-106호(2016.12.23) 제6조, 교원양성연수과-1180(2019-02-28) “201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안내”

대상자	면제근거 (관련고시)	2014년 입학자부터		2019년 입학자부터	
		교육실습	교육봉사	교육실습	교육봉사
♦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	제6조 3항	면제	면제	면제	면제
♦ <산학겸임교사/영어회화전문강사/다문화언어강사/강사>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자 - 강사(중고등학교만 한정하며, 고용계약서 혹은 경력증명서당 전일제임을 증명하는 문구 반드시 필요) ▶ 영어회화전문강사(고용계약서 혹은 경력증명서상 영어회화전문강사 직급 필히 명시)	제6조 5항	면제	면제불가	면제	면제
♦ [영양교사] 영양사면허를 소지하고, 관련 해당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[비정규직 학교영양사, 위탁급식업체 소속의 학교 급식 영양사 포함→해당 학교장 명의 '경력인정증명서(첨부1)' 제출 필요] ※ 해당기관 · <유아교육법> 제2조에 따른 유치원 · <초·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 · <고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 · <평생교육법>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	제6조 7항	면제	면제불가	면제	면제
♦ [전문상담교사2급]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, 해당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※ 관련자격증 : 청소년상담사,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2급 이상 자격증,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※ 해당기관 · <초·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 · 시·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· <평생교육법>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· <청소년복지지원법>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	제6조 8항	면제	면제불가	면제	면제

※ 제출서류 : ① 면제신청서 1부. ② 해당 근거자료(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 등) 1부.